

	<h2 style="margin: 0;">제주한라대학교 학칙</h2>	제정일자	1979.03.01.
		최종개정일자	2026.04.27.
		담당부서	교무처/기획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주한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4., 2011.11.20.>

제2조(명칭) 본 대학교는 제주한라대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 대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에 둔다. <개정 2011.11.20.>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본 대학교에 두는 학과, 계열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별도 입학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3.01., 2009.08.20., 2010.03.01., 2010.12.08., 2012.03.01., 2012.10.30., 2013.01.14., 2014.06.12., 2014.07.01., 2015.08.13.>, <개정 2016.05.20., 시행 2017.03.01.> <개정 2017.04.06., 시행 2018.03.01.> <개정 2019.05.02., 시행 2020.03.01.> <개정 2020.04.06., 시행 2021.03.01.> <개정 2021.05.20., 시행 2022.03.01.> <개정 2022.04.11., 시행 2023.03.01.> <개정 2024.05.24., 시행 2025.03.01.> <개정 2025.04.28., 시행 2026.03.01.> <개정 2026.04.27, 시행 2027.03.01.>

학과	입학정원		
	주간	야간	계
간호학과	210		210
마산업자원학과	24		24
마사학과	24		24
호텔경영학과	50		50
호텔외식경영학과	50		50
국제경영학과	40		40
방송영상학과	40		40
사회복지학과	40		40
산업디자인학과	30		30
인공지능학과	35		35
임상병리과	40		40
방사선과	80		80
물리치료과	40		40
작업치료과	40		40

응급구조과	64		64
보건행정과	30		30
관광경영과	50		50
관광영어과	20		20
관광일본어과	25		25
관광중국어과	30		30
호텔조리과	160		160
레저스포츠과	40		40
사회복지과	50		50
유아교육과	70		70
컴퓨터정보과	20		20
드론공간정보학과	20		20
건축디자인과	32		32
음악과	20		20
뷰티아트과	60		60
환경원예과	20		20
자율전공학과	30		30
계	1,484		1,484

②학과운영의 효율화와 학제간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학부 또는 계열을 운영한다. <신설 2009.11.24.>

제4조의2(학과개편에 따른 조치사항)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2년제 및 3년제 학과 학생의 경우는 2년제 및 3년제 모집단위 내에서, 4년제 학과 학생의 경우는 4년제 모집단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7.21.>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3년 또는 4년으로 한다. 4년제 학과는 간호학과, 마산업자원학과, 마사학과, 호텔경영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방송영상학과, 사회복지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인공지능학과이며 3년제 학과는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응급구조과, 보건행정과, 건축디자인과, 유아교육과로 하고, 그 이외의 학과는 2년제 학과로 한다. <개정 2010.03.01., 2012.03.01., 2013.01.14., 2014.06.12., 2015.08.13., 2017.07.24., 2019.05.02.> <개정 2022.04.11., 시행 2023.03.01.> <개정 2024.05.24., 시행 2025.03.01.>

제6조(재학연한) ①[삭제]

②[삭제]

제3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개정 2017.07.24.>

제7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개정 2009.03.01.>

제8조(학기) ①학기는 1년 2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부, 학과 학년별로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년도 개시 전까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7.07.24.>

1. [삭제 2017.07.24.]
2. [삭제 2017.07.24.]

②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수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07.24., 2017.09.29.>

[전문개정 2015.08.13.]

제9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07.24.>

②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학년도 2주의 범위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08.13.]

제10조(휴업일) ①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8.13.>

1. [삭제 2017.07.24.]
2. [삭제 2017.07.24.]
3. 개교기념일 : 3월 31일
4. 토요일 및 일요일 <개정 2015.08.13.>
5. 국정공휴일
6. [삭제 2015.08.13.]

②하계방학, 동계방학기간은 매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08.13.> [총전의 제10조 제2항은 제10조 제3항으로 이동 2015.08.13.]

③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총장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제2항에서 이동 2015.08.13.]

제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11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 개정 2015.08.13.>

제12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3조(입학지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증명서

- 2. 최종 학교의 성적 증명서
- 3. 생활기록부 사본
-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14조(입학전형) ①입학전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가 공표한 해당 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5.08.13., 2017.09.29.>

- 1. [삭제 2015.08.13.]
- 2. [삭제 2015.08.13.]
- 3. [삭제 2015.08.13.]

②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0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또는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심사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09.29., 2021.08.23.>

제14조의2(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의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동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나목의 외국인에 대한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유학생입학전형·심사관리 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1.08.23.> [총전의 제14조의2 제2항은 제14조의2 제3항으로 이동 2021.08.23.]

③제1항 및 제2항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외국인유학생입학전형·심사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09.29., 2021.08.23.> [제14조의2 제2항에서 이동 2021.08.23.]

제14조의3(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5.01.09.]

제14조의4(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09.29.>

[본조신설 2015.08.13.]

제15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매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신입생모집요강에 의거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08.20.>

제15조의2(입학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3.01.>

-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신설 2009.03.01.>

- 2. 이중학적을 가진 자 <신설 2009.03.01.>
- 3. 입학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신설 2009.03.01.>

제16조(편입학) ①편입학은 지원자의 학력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한다.

- 1. 제2학년 편입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1학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 2. 제3학년 편입학: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에서 2학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 3. 제4학년 편입학: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자에 한하여 허용함. (단, 4년제 대학 3학년 수료자는 4학년 편입 불가) <개정 2012.03.01., 2016.07.21., 2017.07.24., 2022.02.21., 2026.02.11.>

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한다. (단, 제2항 제2호의 외국인은 제외) <개정 2015.03.01., 2016.07.21., 2026.02.11. >

③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 1.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은 4년제 학과의 제2, 3, 4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다.
-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 국적 학생은 학과별 입학정원과 관계없이 수험능력을 고려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6.02.11.>

④ 편입학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심사 기준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07.21.> <개정 2017.09.29., 2026.02.11.>

제16조의2(전과) ①전과는 제1학년 2학기부터 졸업학년의 최종 직전학기까지 산업체위탁생과정, 계약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제외하고 전과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08.13., 2018.02.12.>

②전과는 전입과의 입학정원 20% 범위 내에서 전입하고자 하는 학과 소속의 학부회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허가한다. <개정 2015.03.01., 2015.08.13.>

③전과한 자의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2017.09.29.>

④[삭제 2018.12.12.]

⑤2년제 및 3년제 학과 학생의 전과는 2년제 및 3년제 모집단위 내에서, 4년제 학과 학생의 전과는 4년제 모집단위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07.21.>

제17조(재입학) ①퇴학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적된 자는 정상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 안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재입학은 학칙이 정하는 학생정원의 범위안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한다. 다만, 교원 및 보건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2015.08.1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987년 7월 1일부터 19

93년 2월 24일까지 제적된 자(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써 사실상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중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09.29.>

제18조(등록)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양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휴학, 퇴학 및 제적

제19조(휴학) ①질병, 창업,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28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4.04.23., 2015.08.13., 2016.11.24., 2017.07.24.>

②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1학기 이상 정규 창업교육과목을 이수한 자로써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신설 2014.04.23.> [총전의 제19조 제3항은 제19조 제4항으로 이동 2014.04.23.]

④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복학하지 않고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으며 의사가 건강상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제3항에서 이동 2014.04.23.] [총전의 제19조 제4항은 제19조 제5항으로 이동 2014.04.23.] <개정 2020.09.01.>

⑤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개정 2009.03.01.> [제19조 제4항에서 이동 2014.04.23.]

⑥신입학 및 편입학 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는 질병,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이외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7.06.09.> <개정 2017.09.29.>

제19조의2(복학) ①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 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17.07.24.>

②복학은 학기개시 4주 전부터 학기개시 후 4주 이전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2.12.>

③일반휴학 중 군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03.01.]

제20조(자퇴) ①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24., 2021.03.01.>

②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신설 2009.11.24.>

제21조(제적) ①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5.08.13., 2016.07.21., 2020.04.06.>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08.13.>
2. 정당한 이유 없이 4주를 초과하여 결석한 자 <개정 2016.07.21.>
3. [삭제 2016.07.21.]
4.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20.04.06.>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품행이 불량하고, 학생 신분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개정 2020.04.06.>
7.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8. 계속 3회 또는 통산 4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신설 2017.07.24.>

②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에 대하여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신설 2015.08.13. 신설>

제6장 교과 및 수업

제22조(교육과정) ①[삭제 2016.11.24.]

②교육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 기준은 교양교과 10%~20% 전공교과 80%~90%로 한다. 단,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산업체위탁생반, 계약학과, 외국인유학생반 등은 외국대학과의 협약 내용 및 산업체의 요구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20., 2012.03.01., 2016.11.24. 2017.07.24., 2021.08.23.>

③학부·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양 및 전공교과는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03.01.,2013.01.14., 2016.11.24., 2021.08.23.>

④현장실습은 전공교과로 한다. <개정 2016.07.21., 2016.11.24., 2021.08.23.>

⑤전 학과는 현장중심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하며, NCS(국가직무능력표준)가 개발된 학과는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05.20.> <개정 2021.08.23.>

⑥교육과정(현장실습 포함)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24.> <개정 2017.09.29.>

제22조의2(원격강좌 등) ①본 대학교에 개설한 강좌는 방송, 통신 등 원격강좌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0., 2017.07.24., 2017.09.29.>

②[삭제 2022.02.21.]

③[삭제 2022.02.21.]

[조명개정 2017.7.24.]

제22조의3(공개강좌) ①본 대학교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1.11.20.>

②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09.29.>
[본조신설 2009.03.01.]

제22조의4(마이크로디그리) 세부화한 전문 분야 교육과 다양한 융·복합 교육을 위해 마이크로디그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08.08.]

제22조의5(융합전공) 둘 이상의 학과(부)가 융합하여 운영하는 융합전공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02.05.]

제22조의6(무정원학과)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없는 학부(과)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정부재정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외국인전형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②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무정원학과의 명칭 등은 아래와 같다.

무정원학과 명칭	지능IoT학과
학 위 명	지능IoT전문학사
학위구분	전문학사
수업연한	3년

[본조신설 2025.08.18.]<개정 2026.02.11.>

제22조의7(비교과 교육과정) 대학의 핵심역량강화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로 개설하는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08.18.]

제23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본 대학교에서는 3개월 내지 1년 과정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1.20.>

②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1.11.20.>

③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 및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관할청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개정 2017.07.24., 2017.09.29.>

제23조의2(시간제등록생의 선발·운영) ①본 대학교에서는 일반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된 학과에 한하여 시간제등록생을 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11.09.01., 2011.11.20.>

②시간제등록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하며, 선발방법은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의 성적 등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1.09.01.>

③시간제등록생은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

로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당해학과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하며,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단, 전문인을 양성하는 간호.보건 계열 및 사범 계열은 제외한다. <개정 2011.09.01., 2012.03.01.>

④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정규학생의 교육과정 범위에서 개설 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는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01., 2017.09.29.>

⑤시간제등록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01.>

⑥시간제등록생이 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09.01.>

⑦기타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09.01., 2017.09.29.>

제23조의3(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①본 대학교에 전공심화과정으로 보건학과, 관광경영학과, 외국어통역학과, 호텔조리학과, 유아교육학과, 건축디자인학과를 둔다. <개정 2008.03.01., 2010.12.08., 2011.11.20., 2012.03.01., 2012.10.30. 2016.02.22., 2017.09.29., 2024.11.11.>

②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제의 전문학사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는 2년 이상, 3년제의 전문학사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는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03.01.>

③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공분야와 동일계열의 전문학사과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로서 우리대학교의 해당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신설 2008.03.01.> <개정 2012.03.01., 2017.07.24.>

④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03.01.>

⑤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매학기 8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9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8학점 미만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08.03.01.>

⑥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전문대학과정 이수학점의 인정범위는 2년제 학과 졸업자는 74학점 이내, 3년제 학과 졸업자는 1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신설 2008.03.01.> <개정 2018.12.12.>

⑦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8.03.01.> <개정 2017.09.29.>

제23조의4(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고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20

17.07.24.>

②연계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본 대학교에 입학할 원하는 경우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0.>

③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5(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 제5항 및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관련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09.29.>

[전문개정 2016.11.24.]

제23조의6(학점은행제) 본 대학교에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0., 2017.09.29.>

제23조의7(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①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않는 과정(이하“비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비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③비학위과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09.29.>

[본조신설 2008.03.01.]

제23조의8(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 운영) ①본 대학교에는 공학기술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1.20.>

②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은 본 대학교 전문학사 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부설하며,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이 설치된 학과 및 수여학위명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02.26., 2011.11.20.>

③[삭제 2017.07.24.]

④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의 운영, 이수학점 및 졸업기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0.02.26.> <개정 2017.07.24., 2017.09.29.>

⑤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으로의 전입생(재입학, 편입학, 전과, 복학 등)을 위하여 별도의 수용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절차는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0.02.26.> <개정 2017.09.29.>

제23조의9(4년제 학제개편 학과 재학생의 교육과정 설치·운영) 3년제에서 4년제로 학제가 개편됨에 따라 3년제로 입학한 재학생의 교육과정은 별도로 편성·운영한다.

[본조신설 2012.03.01.]

제23조의10(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등) ①본 대학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전문학사과정 및 학사과정 등(이하“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운영경비 및 그 부담, 학생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 운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09.29.>

③「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계약에 학위수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계약학과 등은 아래와 같다. <신설 2015.01.09.> <개정 2017.02.10., 2017.12.05.>

계약학과 명칭	호텔외식조리과
학 위 명	호텔외식조리전문학사
학위구분	전문학사
수업연한	2년
입학정원	250명

제24조(교과이수단위) ①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4년제는 130학점 이상, 3년제는 112학점 이상, 2년제는 74학점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12.03.01., 2016.11.24., 2018.12.12., 2020.09.01., 2022.08.08.>

1. 학과 필수과목 <신설 2022.08.08.>
2. 졸업이수학점의 10%이상 교양과목 단, 교양외국어 또는 교양IT관련 과목 2학점 이상 이수 <신설 2022.08.08.>

③[삭제 2015.03.01.]

④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현장실습취득학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8.13., 2016.07.21.>

⑤제22조 제4항에 의한 현장실습 학점은 1학점 이상으로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08.13., 2017.09.29.>

⑥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입학한 자가 본 대학교에 개설된 과목과 동일과목을 기 졸업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1.20.>

⑦[삭제 2026.02.11.]

제24조의2(학기당 이수학점) ①전문학사과정 및 학사과정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는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6.02.11.>

②[삭제 2026.02.11.]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과목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 2026.02.11.>

④[삭제 2026.02.11.]

제25조(수업) ①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해 할 수 있다. <신설 2009.03.01.> <개정 2015.08.13.>

②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해당 학기 수업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09.03.01.>

제25조의2(교원의 교수시간) ①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에 따라 매주 9시간에서 1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03.01., 2017.09.29., 2019.07.16.>

②연구 및 산학협력실적에 따른 강의 책임시간의 조정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03.01., 2017.09.29.>

제25조의3(집중수업)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 할 수 있다. 단, 집중수업을 시행 할 경우에는 학기개시일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4.02.05.>

[전문개정 2017.07.24.]

제25조의4(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09.29.>

[본조신설 2009.03.01.]

제25조의5(출석) ①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경조사,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24., 2017.07.24.>

③2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취업자(채용전환형 인턴 포함)에 대해서는 재학 중 마지막 학기에 한하여 결석일이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1.24.> [총전의 제25조의5 제3항은 제25조의5 제4항으로 이동 2016.11.24.]

④원격수업의 출석 인정 기준 및 결석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2.> [총전의 제25조의5 제4항은 제25조의5 제5항으로 이동 2018.12.12.]

⑤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6.11.24.> [제25조의5 제3항에서 이동 2016.11.24.] [제25조의5 제4항에서 이동 2018.12.12.]

[본조신설 2015.08.15.]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6조(평가시험) ①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학기말에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임시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②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조기취업(채용전환형 인턴 포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부장의 요청으로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시험 응시 또는 과제물 제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중심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현장중심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교과목은 학생들의 성취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6.05.20.> <개정 2017.09.29., 2021.08.23.>

⑤총장이 인정한 장애학생의 경우 평가시험 시간 연장, 보조요원 동석 등 총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0.09.01.>

제27조(성적) ①학업성적은 각 과목별 시험성적, 과제물 성적,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3.01.>

②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9단계로 구분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⁰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03.01., 2024.09.27.>

9단계 평점 방법

등급	배점	평점	비고
A ⁺	100 - 95	4.5	
A ⁰	94 - 90	4.0	
B ⁺	89 - 85	3.5	
B ⁰	84 - 80	3.0	
C ⁺	79 - 75	2.5	
C ⁰	74 - 70	2.0	
D ⁺	69 - 65	1.5	
D ⁰	64 - 60	1.0	
I	미완		
F	59 이하	0	
P		불계	

③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현장실습 교과목 및 선행학습 인정학점 관련 교과목의 경우 급제는 PA(Pass)로 낙제는 F(Fail)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되, 평점평균 산출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학과 특성상 성적평가를 등급으로 표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재가를 얻

어 등급으로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03.01., 2016.07.21., 2021.03.01., 2022.08.08.>

⑥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3.03.01.> <개정 2017.09.29.>

⑦성적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이 미비한 경우 I학점(미완학점)으로 처리하며, 졸업 전까지 이를 보완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신설 2024.09.27.>

제27조의2(학점 및 교과목이수의 인정) ①재학생이 재학기간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은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외국대학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09.29.>

②병역법에 의해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고자할 경우에는 이를 본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0.02.26.> <개정 2011.11.20., 2017.09.29.>

③병역법에 의해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를 본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0.02.26.> <개정 2011.11.20., 2017.09.29.>

④대학에서 인정하는 특별과정(산학협동교육과정, 어학과정, 평생교육과정 등)을 이수할 경우 이를 본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0.02.26.> <개정 2011.11.20., 2017.09.29.>

⑤성인학습자가 입학전 정규교육 이외의 영역에서 습득한 근로경험, 학습경험 등이 평가인정을 통하여 입증되면, 졸업학점의 1/4 범위 안에서 특정한 교과목의 선행학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3.03.01.> [중전의 제27조의2 제5항은 제27조의2 제7항으로 이동 2013.03.01.] <개정 2026.02.11.>

⑥편입학한 사람은 전적대학의 교과목 이수내용 및 이수학점을 심사하여 기준학점을 인정하고 잔여학점을 이수하게 한다. 다만 각 학년별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03.01.>

⑦학점 및 교과목이수의 인정 등에 관한 운영방안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의2 제5항에서 이동 2013.03.01.] <개정 2017.09.29.>

제27조의3(성적포기) [삭제 2014.03.01.]

제27조의4(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 ①사회봉사활동을 종료한 자에게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1.06.21.> <개정 2017.09.29.>

제27조의5(비교과 교육과정의 학점인정) ①특정 비교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08.18.] [총전의 제27조의5는 제27조의6으로 이동 2025.08.18.]

제27조의6(창업대체학점인정) ①창업준비활동 및 창업활동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4.06.] [총전의 제27조의5는 제27조의6으로 이동 2020.04.06.] [제27조의5에서 이동 2025.08.18.] [총전의 제27조의6는 제27조의7으로 이동 2025.08.18.]

제27조의7(학점인정심의회) ①「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학점인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03.01.] [제27조의5에서 이동 2020.04.06.] [제27조의6에서 이동 2025.08.18.]

제28조(진급인원) [삭제 2016.07.21.]

제29조(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취소한다.

제30조(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09.29.>

제31조(졸업 및 수료) ①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제2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 제1호(전문학사) 및 별지 제1호의2(영문학위증)(전문학사) 또는 별지 제4호(학사학위) 및 별지 제4호의2(영문학위증)(학사)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과정의 인증기준을 이수한 자는 별표 3에 의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0.02.26., 2012.03.01., 2022.08.08.>

②1997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7.21., 2018.02.12., 2018.12.12.>

구분	4년제	3년제	2년제
1학년	35학점	36학점	36학점
2학년	70학점	74학점	74학점
3학년	105학점	112학점	
4학년	130학점		

④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⑤학칙 제24조 제2항의 졸업이수학점이 충족된 학생이 졸업 유예를 희망할 경우에는 졸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8.02.12.>

제31조의2(학점인정등에관한법령에 의한 학위수여) 학점인정등에관한법령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1조의3(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전문대학과정 이수인

정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8.12.12.>

②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의거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제1항의 졸업학점에 충족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2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2.03.01.,2012.10.30.>

③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8.03.01.>

제31조의4(명예졸업증서 수여) ① 학술, 문화, 예술, 봉사 등 사회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에게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명예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2.]

제31조의5(융합전공에 대한 학위수여) ①융합전공 이수자는 별표 4에 해당하는 학위를 원 소속학과의 전공과 병행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②마이크로디그리과정 이수자는 과정명을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24.02.05.]

제32조(유급) [삭제 2020.04.06.]

제8장 학생활동

제33조(학생회 조직) ①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민주적인 자치 능력과 지도자적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09.29.>

②본 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휴학 및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기간중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34조(학생회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5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06.19.>

제37조(학생지도) ①학생복지처, 학부, 학과, 지도교수는 매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특히 학칙위반 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24.>

②학생회를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복지 및 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09.29., 2018.04.06.>

제38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교내초청
5. 학과별 행사(MT, 체육대회는 제외) <신설 2015.08.13.> <개정 2019.07.16.>

제39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처벌) 본 장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9장 규율과 상벌

제41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개정 2017.07.24.>

제42조 [삭제 2017.07.24.]

제43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나 기타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4조(징계) ①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위원회, 학생복지 및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9.08.20., 2018.04.06.>

1. 이 학칙을 위반한 자
 2. [삭제 2021.08.23.]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10장 등록금 <개정 2017.07.24.>

제45조(등록금) ①학생은 매학기 등록시기에 소정액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등록금 반환은 교육부령에 준한다. <개정 2017.07.24.>

④졸업 학점을 이수하지 못해 졸업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등록은 교육부령에 준한다. <개정 2017.07.24.>

[조명개정 2017.07.24.]

제45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대학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1.02.28.> <개정 2017.09.29.>

제46조(등록금의 면제·감액) 총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7.07.24.>

1.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7.07.24.>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신설 2017.07.2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7.07.24.>
- [조명개정 2017.07.24.]

제11장 장학금

제47조(장학금) ①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20., 2017.09.29., 2017.12.05.>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개정 2017.09.29.>
2.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개정 2017.09.29.>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개정 2017.09.29.>
4. 기타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자

②공정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7.09.29.> [총전의 제47조 제2항은 제47조 제3항으로 이동 2017.09.29.] <개정 2018.04.06.>

③장학금을 받은 장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제47조 제2항에서 이동 2017.09.29.]

④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8.04.06.>

제12장 전체교수회의 및 교무위원회 <개정 2015.01.09.>

제48조(전체교수회의 구성) 본 대학교에 전체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1.09.>

제48조의2(전체교수회의 소집 및 심의) ①전체교수회의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이 부재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1.09.>

②전체교수회의는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9.03.01., 2015.01.09.>

1. [삭제 2009.03.01.]

2. [삭제 2009.03.01.]

3. [삭제 2009.03.01.]

③[삭제 2009.03.01.]

제49조(교무위원회의 구성) ①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교무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09.29.>

제49조의2(제주한라대학교 대학평의원의회의 구성) 본 대학교에 제주한라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두며 평의원회는 대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20.>

[본조신설 2009.03.01.]

제49조의3(평의원회 소집) 평의원회의 소집은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및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03.18.>

[본조신설 2009.03.01.]

제49조의4(평의원회 기능)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15.08.13.>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9조의4 제5호는 삭제 2015.08.13.] [제49조의4 제6호에서 이동 2015.08.13.]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의 제49조의4 제6호는 제49조의4 제5호로 이동 2015.08.13.] [제29조의4 제7호에서 이동 2015.08.13.]
7. [삭제 2015.08.13.] [종전의 제49조의4 제7호는 제49조의4 제6호로 이동 2015.08.13.]

[본조신설 2009.03.01.]

제49조의5(평의원회 운영)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09.29.>

[본조신설 2009.03.01.]

제13장 직제

제50조(총장)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 대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10.09.09., 2011.11.20.>

제50조의2(교직원) ①본 대학교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전임교원과 사무직원(연구원 포함)

및 조교를 둔다.

② 본 대학교에 전임교원 외에 강사 및 비전임교원(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특임교수, 석좌교수 등)을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07.16.]

제51조(본부조직) ①본 대학교에 기획관리본부, 교학본부, 산학협력본부, 국제교류본부, 국제컨벤션본부를 두고, 기획관리본부에는 기획관리부총장보를, 교학본부에는 교학부총장보를, 산학협력본부에는 산학협력부총장보를, 국제교류본부에는 국제교류부총장보를, 국제컨벤션본부에는 국제컨벤션부총장보겸 본부장을, AX추진본부에는 AX추진부총장보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1.20., 2015.04.17., 2016.11.24., 2017.12.05., 2018.04.06., 2024.08.27., 2025.08.18., 2026.04.27.> [총전의 제51조 제1항은 제51조 제2항으로 이동 2024.08.27.]

②본 대학교에 교무처, 기획처, 산학협력처, 입학홍보처, 학생복지처, 국제교류처, 사무처, 건설관리처, AI혁신처, 한라컨벤션을 둔다. <신설 2017.12.05.> [총전의 제51조 제2항은 제51조 제3항으로 이동 2017.12.05.] <개정 2019.03.18., 2024.08.27., 2026.04.27.> [제51조 제1항에서 이동 2024.08.27.] [총전의 제51조 제2항은 제51조 제3항으로 이동 2024.08.27.]

③총장 직속기구로 비서실, 혁신추진단, LINC+사업단, RISE 추진단, Learning 5.0 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07.30., 2016.11.24., 2017.06.09.> [제51조 제2항에서 이동 2017.12.05.] [총전의 제51조 제3항은 제51조 제4항으로 이동 2017.12.05.] <개정 2024.08.27.> [제51조 제2항에서 이동 2024.08.27.] [총전의 제51조 제3항은 제51조 제4항으로 이동 2024.08.27.]

④각 단·처, 한라컨벤션에는 필요한 부, 팀, 원, 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7.30., 2016.11.24., 2017.06.09.> [제51조 제3항에서 이동 2017.12.05.] [총전의 제51조 제4항은 제51조 제5항으로 이동 2017.12.05.] <개정 2019.03.18., 2024.08.27.> [제51조 제3항에서 이동 2024.08.27.] [총전의 제51조 제4항은 제51조 제5항으로 이동 2024.08.27.]

⑤각 단·처, 한라컨벤션에는 단장, 처장, 부단장, 부처장을, 단·처, 한라컨벤션 및 부, 팀, 원, 센터에는 담당관, 부장, 팀장, 원장, 센터 소장을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13.07.30., 2016.11.24., 2017.06.09.> [제51조 제4항에서 이동 2017.12.05.] [총전의 제51조 제5항은 제51조 제6항으로 이동 2017.12.05.] <개정 2019.03.18., 2024.08.27.> [제51조 제4항에서 이동 2024.08.27.] [총전의 제51조 제5항은 제51조 제6항으로 이동 2024.08.27.]

⑥단장, 처장, 부단장, 부처장, 부장, 팀장, 원장, 센터 소장은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행정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09.09., 2010.12.08.> [제51조 제5항에서 이동 2017.12.05.] [총전의 제51조 제6항은 제51조 제7항으로 이동 2017.12.05.] <개정 2024.08.27.> [제51조 제5항에서 이동 2024.08.27.] [총전의 제51조 제6항은 제51조 제7항으로 이동 2024.08.27.]

⑦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처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담당관은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행정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08., 2013.07.30., 2017.06.09., 2017.9.29.> [제51조 제6항에서 이동 2017.12.05.] <개정 2024.08.27.> [제51조 제6항에서 이동 2024.08.27.] [총전의 제51조 제7항은 제51조 제8항으로 이동 2024.08.27.]

⑧각 본부, 부, 팀, 원, 센터 등의 조직과 사무분장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08.27.> [제51조 제7항에서 이동 2024.08.27.]

제51조의2(교육조직) ①본 대학교에 간호학부, 보건학부, 생명자원학부, 국제관광호텔학부, 사회복지학부, AI융합학부와 인문예술학부를 둔다. <개정 2020.09.01.> <개정 2025.02.25., 시행 2025.03.01.>

②각 학부별 소속학과는 별표 5와 같다.

③각 학부에는 학부장을 두고 부학부장 및 학부부장을 둘 수 있으며, 학과와 과에는 학과장을 둔다. <개정 2016.03.18., 2024.11.11.>

④학부장 및 부학부장, 학부부장, 학과장은 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6.03.18., 2024.11.11.>

⑤각 학부 및 학과의 조직과 사무분장은 총장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8.04.06.> [전문개정 2014.06.12.]

제51조3(산학협력단) ①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며, 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11.20.>

②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에 의해 정한다.

③단장의 임면은 이사회 의결에 의해 결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④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조직을 두며, 그 직제 및 사무분장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08., 2018.04.06.>

⑤기타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8.04.06.>

제51조의4(학교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본 대학교에 별표 6과 같이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09.29.>

[본조신설 2016.03.18.]

제51조의5(학교기업의 현장실습) ①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수업연한 2년제 학과는 총 20학점, 4년제 학과는 총 3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06.>

[본조신설 2016.03.18.]

제51조의6(학교기업 보상금 지급 기준) ①학교기업의 운영성과 발생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년도 수익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한다.

③학교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교직원 및 학생이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기타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06.>

[본조신설 2016.03.18.]

제51조의7(인권센터)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본 대학교에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02.21.]

제51조의8(안전보건관리본부) 본 대학교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본부를 설치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08.08.]

제51조의9(박물관) 본 대학교에 박물관을 설치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06.19.]

제14장 부속기관

제52조(부속기관 및 부속시설) ①본 대학교에 부속기관 및 부속시설로 미래교육원, 정보전산원, 도서관, 신문방송사, 한라아트홀, 한라학사, 보건실, 평생교육원, 예비군중대, 한라디지털아트뮤지엄, 실습목장을 둔다. <개정 2011.11.20., 2013.06.28., 2014.03.01., 2014.04.23., 2015.01.09., 2015.08.13., 2015.11.12., 2016.02.22., 2016.03.18., 2016.05.20., 2017.04.06., 2018.04.06., 2021.03.01., 2022.08.08., 2023.06.19., 2025.02.25.>

②부속기관 및 부속시설의 장은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행정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04.23.>

③부속기관 및 부속시설의 장은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총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기관 및 부속시설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04.23.>

④부속기관 및 부속시설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조항 전면개정 2010.09.09.> <개정 2014.04.23., 2017.09.29.>

제15장 보칙

제53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08.20., 2017.09.29.>

제54조(산업체위탁교육) ①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09.29.>

제55조(학칙 제.개정절차) ①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③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0.>

④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사전 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⑥[삭제]

제56조(자체평가) ①본 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08.20.> <개정 2017.09.29.>

제57조(장애학생의 지원) ①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학생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1.02.28.> <개정 2017.09.29.>

제58조(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삭제 2015.03.01.]

제59조(소수집단학생의 지원) ①소수집단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소수집단학생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8.04.06.>

②소수집단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8.04.06.> [본조신설 2015.08.13.]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주간호전문학교는 재학생(휴학자 포함, 이하 같다)이 졸업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휴학생이 복학할 수 있는 기간은 1983년까지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제주간호전문대학 재학생은 변경학칙에 의한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의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졸업자격고사 합격자 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중 전문대학 전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졸업자격고사 합격자 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중 전문대학 전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자격고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 중 간호과의 학생이 1989학년도까지, 그 외의 학생이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 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 소속 변경) 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199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당시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한 한라전문대학의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③(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당시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소속 교직원은 이학칙에 의

한 한라전문대학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과정에 따른 경과조치) 199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 제1항의 규정은 199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1993학년도 이전 입학생중 1994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전통조리과 및 비서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각각 호텔조리과, 비서행정과 소속으로 본다.

③(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전통조리과 및 비서과 소속교직원은 각각 호텔조리과, 비서행정과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교양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여성복지과 소속으로 본다.
- ③(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여성교양과 소속교직원은 여성복지과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비서행정과와 여성복지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각각 행정과와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본다.
- ③(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비서행정과와 여성복지과 소속교직원은 각각 행정과와 사회복지과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2항 및 제51조 제1항은 199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한라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한 제주한라대학의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③(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한라전문대학 소속 교직원은 이 학칙에 의한 제주한라대학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 ①항 및 [별표 1]은 199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관광영어통역과, 관광노어통역과, 전산정보처리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각각 관광영어과, 관광러시아어과, 컴퓨터정보과 소속으로 본다.

③(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관광영어통역과, 관광노어통역과, 전산정보처리과 소속교직원은 각각 관광영어과, 관광러시아어과, 컴퓨터정보과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④항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의무행정과, 행정과, 사무자동화과, 건축설계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각각 의료정보관리과, 행정정보관리과, 테크노경영정보과, 건축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 ③(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의무행정과, 행정과, 사무자동화과, 건축설계과 소속교직원은 각각 의료정보관리과, 행정정보관리과, 테크노경영정보과, 건축디자인과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 가. 종전의 컴퓨터정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컴퓨터정보계열 소속으로 본다.
 - 나. 종전의 테크노경영정보과 및 정보통신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정보통신계열 소속으로 본다.
- ③(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컴퓨터정보과 소속 교직원은 컴퓨터정보계열 소속 교직원으로, 테크노경영정보과 및 정보통신과 소속 교직원은 정보통신계열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200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정보통신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정보통신과 또는 인터넷전자상거래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가. 종전의 컴퓨터정보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컴퓨터정보활용과 또는 컴퓨터멀티미디어과 소속으로 본다

나. 이 학칙 시행 당시 의료정보관리과, 피부미용과, 생활체육과, 영상애니메이션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각각 병원경영과, 뷰티아트과, 생활레저스포츠과, 방송영상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2월27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관광중국어통역과, 행정정보관리과, 광고.멀티미디어디자인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각각 관광중국어과, 행정정보과, 시각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뷰티아트과, 행정정보과, 인터넷전자상거래과, 생활음악과, 생활레저스포츠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각각 뷰티아트계열, 복지행정과, 전자상거래과, 음악과, 관광레저스포츠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관광일어통역과, 전자상거래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각각 관광일본어과, e-경영정보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뷰티아트계열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뷰티아트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8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병원경영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보건행정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9월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10년12월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1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2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전 종전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이 학칙 제45조의 2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전 종전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학칙 제45조의 2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생에 관한 경과조치)이 학칙시행 당시 제주한라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한 제주한라대학교의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③(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시행 당시 제주한라대학 소속 교직원은 이 학칙에 의한 제주한라대학교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5조(학칙 제.개정절차)는 201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학과의 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② 종전의 간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입학한 3년제로 졸업할수 있다. 다만, 3년제로 입학한 간호과 재적생 중 본인의 서면 신청이 있을 경우 간호학과 4학년에 진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학과의 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② 종전의 간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입학한 3년제로 졸업할수 있다. 다만, 3년제로 입학한 간호과 재적생 중 본인의 서면 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간호학과 4학년에 진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2014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201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학칙 중 제4조, 제5조, 제51조의2, 별표 1 및 별표 5의 개정사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4.6.12. 개정)

제2조(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학칙 중 제4조의 개정사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4.7.1. 개정)

제2조(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2.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5조 및 별표 1, 별표 5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 전 마축자원학과, 외식경영학과, 관광레저스포츠과 각각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마산업자원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 레저스포츠과 각각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전공심화과정 간호학과, 방송영상학과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되, 제27조제5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 전 외식산업경영학과, 중국경제무역학과, 디지털콘텐츠과 각각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호텔외식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컴퓨터멀티미디어과 각각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부속기관 및 부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한라컨벤션센터, 연수원(게스트하우스)는 산학협력처 산하로 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의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23조제3항, 제23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② 제45조제3항,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의3(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제1항, [별표 2], [별표 5] 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3조의3, 제24조, 제31조, 제31조의3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9학년도 1학년으로 복학, 재입학, 전과하는 학생들도 이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1]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4조의 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7조의 사항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개정 이전 외국인 유학생이 기존 외국인유학생입학전형관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및 제5조(수업연한)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 제22조의4(마이크로디그리), 제27조(성적)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제24조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제22조의5(융합전공), 제25조의3(집중수업), 제31조의5(융합전공에 대한 학위수여)는 202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제24조 제7항의 개정 사항은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및 제5조(수업연한), [별표 1], [별표 4], [별표 5]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제51조의2(교육조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학칙>

2.(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학 위 : ○○전문학사[○○과]

○○전문학사[○○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 ○○○○, ○○○○

년 월 일

제주한라대학교총장(인)

학위번호 : 제주한라대학교-0000-0000

[별지 제1호의2 서식] 영문학위증(전문학사)

Cheju Halla University

the Trustees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ereby confer upon

(영문성명) ○ ○ ○

the Associate Degree of

(영문 학위명) ○○○ in (영문학과(전공)명) ○○○

(영문 학위명) ○○○ in (융합전공명) ○○○

Micro Degree ○○○, ○○○

with all the rights, honors, and obligations thereto pertaining
in witness whereof this diploma is conferred at Cheju Halla University
this ○○ day of ○, ○○○○

(seal)

President Sung-Hun Kim, Ph.D.

Diploma Number : chu-0000-0000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과 0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
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제주한라대학교총장(인)

학위번호 : 제주한라대학교-0000-0000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수료증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과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제주한라대학교총장(인)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학 위 : ○ ○ 학사 [○ ○ 학과]

○ ○ 학사 [○ ○ 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 : ○ ○ ○ ○ , ○ ○ ○ ○

년 월 일

제주한라대학교총장(인)

학위번호 : 제주한라대학교-0000-0000

[별지 제4호의2 서식] 영문학위증(학사)

Cheju Halla University

the Trustees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ereby confer upon

(영문성명) ○ ○ ○

the Degree of

Bachelor of (영문 학위명) ○○○ in (영문학과(전공)명) ○○○

(영문 학위명) ○○○ in (융합전공명) ○○○

Micro Degree ○○○, ○○○

with all the rights, honors, and obligations thereto pertaining
in witness whereof this diploma is conferred at Cheju Halla University
this ○○ day of ○, ○○○○

(seal)

President Sung-Hun Kim, Ph.D.

Diploma Number : chu-0000-0000

[별표 1]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의 종별

종별	해당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이학사	마추자원학과, 마사학과, 마산업자원학과
경영학사	호텔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중국경제무역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방송영상학사	방송영상학과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과
디자인학사	산업디자인학과
공학사	지능형시스템공학과, 인공지능공학과, 인공지능학과
간호전문학사	간호과(수업연한 3년제 간호과)
보건전문학사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의무행정과, 응급구조과, 작업치료과, 의료정보관리과, 병원경영과, 보건행정과
미용전문학사	피부미용과, 뷰티아트과, 뷰티아트계열
관광외국어전문학사	관광영어통역과, 관광일어통역과, 관광중국어통역과, 관광영어과, 관광중국어과, 관광일본어과
관광전문학사	관광경영과, 호텔외식경영과
행정전문학사	비서행정과, 여성복지과, 비서과, 행정과, 행정정보관리과, 행정정보과,
사회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과, 복지행정과
가정전문학사	여성교양과
조리전문학사	호텔조리과, 전통조리과
공업전문학사	전산정보처리과, 사무자동화과, 컴퓨터정보활용과(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컴퓨터멀티미디어과(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2018학년도 졸업생까지 적용), 정보통신과(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2018학년도 졸업생까지 적용), e-경영정보과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컴퓨터전문학사	컴퓨터정보과, 컴퓨터정보계열, 컴퓨터정보활용과 (2010학년도 졸업생까지 적용), 컴퓨터멀티미디어과 (2010학년도 졸업생까지 적용)
경영정보전문학사	테크노경영정보과, e-경영정보과(2010학년도 졸업생까지 적용)
정보통신전문학사	정보통신과(2010학년도 졸업생까지 적용), 정보통신계열
건축전문학사	건축설계과, 건축디자인과(2011학년도 졸업생까지 적용)(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공학전문학사	건축디자인과(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2018학년도 졸업생까지 적용), 컴퓨터멀티미디어과(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2027학년도 졸업생까지 적용), 정보통신과(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드론공간정보학과(202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음악전문학사	생활음악과, 음악과
디자인전문학사	광고디자인과, 광고.멀티미디어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체육전문학사	생활체육과, 생활레저스포츠과, 관광레저스포츠과, 국제태권도과, 체육과, 레저스포츠과
교육전문학사	유아교육과
전자상거래전문학사	인터넷전자상거래과, 전자상거래과
영상애니메이션전문학사	영상애니메이션과
방송영상전문학사	방송영상과
정보기술전문학사	디지털콘텐츠과, IT융합과
환경원예전문학사	환경원예과
지능IoT전문학사	지능IoT학과

<개정 2009.11.24., 2010.12.08., 2012.03.01., 2013.01.14., 2014.04.23., 2014.06.12., 2015.08.13., 2019.05.02., 2019.07.16., 2020.04.06.> <개정 2022.04.11., 시행 2023.03.01.> <개정 2024.05.24., 시행 2025.03.01.><개정 2026.02.11.><개정 2026.04.27.>

[별표 2]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의 종별

학위종별	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보건학사	보건학과
관광학사	관광학과, 관광경영학과
통역학사	외국어통역학과
체육학사	레저스포츠학과
교육학사	유아교육학과
통신컴퓨터공학사	통신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사	컴퓨터공학과
건축학사	건축디자인학과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과
호텔조리학사	호텔조리학과
방송영상학사	방송영상학과

<개정 2009.11.24., 2010.12.08., 2012.03.01., 2013.03.01., 2016.02.22., 2017.09.29.>

[별표 3]

공학기술교육인증 학위 명칭

학과	학위명칭 구분	
	인증학위과정 학위명칭	일반학위과정 학위명칭
정보통신과	공학전문학사	공학전문학사
	AS in Engineering	AS in Engineering
컴퓨터멀티미디어과	공학전문학사	공학전문학사
	AS in Engineering	AS in Engineering
AS: Associate of Science BS: Bachelor of Science		

<신설 2010.02.26.> <개정 2010.12.08., 2015.01.09., 2019.07.16.>

[별표 4]

융합전공 학위의 종별

융합전공명	학위종별
지능형콘텐츠융합전공	지능형콘텐츠학사
지능IoT융합전공	지능IoT학사 지능IoT전문학사
AI콘텐츠	AI콘텐츠학사
AI빅데이터	AI빅데이터학사 AI빅데이터전문학사
AI헬스케어	AI헬스케어학사 AI헬스케어전문학사
AI시스템제어	AI시스템제어학사 AI시스템제어전문학사
AI우주항공	AI우주항공학사 AI우주항공전문학사

<신설 2024.02.05.> <개정 2024.05.24., 시행 2025.03.01.> <개정 2025.08.18.>

<개정 2026.02.11.>

[별표 5]

학부	학사학위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전공심화학사학위과정
간호학부	간호학과		
보건학부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작업치료과 응급구조과 보건행정과	보건학과
생명자원학부	마산업자원학과 마사학과	환경원예과	
국제관광호텔학부	호텔경영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관광경영과 호텔조리과 레저스포츠과	관광경영학과 호텔조리학과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유아교육학과
AI융합학부	방송영상학과 인공지능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컴퓨터정보과 건축디자인과 드론공간정보학과 자율전공학과 지능IoT학과	건축디자인학과
인문예술학부		음악과 뷰티아트과 관광영어과 관광일본어과 관광중국어과	외국어통역학과

<신설 2014.06.12.> <개정 2015.03.01., 2015.08.13., 2016.02.22., 2017.09.29., 2019.05.02., 2020.09.01.> <개정 2022.04.11., 시행 2023.03.01.> <개정 2024.05.24., 시행 2025.03.01.> (개정 2024.11.11.) <개정 2025.02.25., 시행 2025.03.01.> <개정 2025.04.28., 시행 2026.03.01.> <개정 2026.02.11.> <개정 2026.04.27., 시행 2027.03.01.>

[별표 6]

학교기업 명칭, 관련 학부·전공학과, 사업종목, 소재지

명칭	관련학부·전공학과	사업종목	소재지
한라에코푸드	국제관광호텔학부 호텔조리과	일반음식점업 비알콜음식점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신설 2016.03.18.> <개정 2017.06.09.>